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86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조계원 · 김문수 · 주철현

김우영 • 양문석 • 양부남

민병덕 • 윤준병 • 안호영

이개호 · 신정훈 · 이강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법률 제 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회원심사위원회의"를 "그 밖에 회원심사위원회의"로, "총회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한다.

- ② 회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술원의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위원 중 회원은 5인 이내로 한다.
- 1. 회원
- 2. 예술의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제6조제1항 중 "평생 동안으로 한다"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시상)"을 "(예술원상 선정 및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예술원상의 수상자는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총장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 ③ 그 밖에 예술원상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회원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회원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회원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원의 선출) ① (생 략)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회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
	<u>원으로 구성한다.</u>
<u><신 설></u>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술원의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위원 중 회원은 5인 이내
	<u>로 한다.</u>
	<u>1. 회원</u>
	2. 예술의 각 분야별 전문가 중
	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그 밖에 회원심사위원회의-
에 필요한 사항은 <u>총회에서</u> 정	<u>대통</u>
한다.	<u> </u>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임기는 <u>평생 동안으로 한다</u> .	<u>4년으로 하되, 1회에</u>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원의 대우) ① (생 략)	제7조(회원의 대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삭 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 금을 지급한다.

제13조(시상) (생략)

<신 설>

<신 설>

제13조(예술원상 선정 및 시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② 예술원상의 수상자는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 는 대학의 총장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 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 ③ 그 밖에 예술원상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